이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.

제주지방검찰청

주 소 : 제주시 이도2동 950-1
전화번호 : (064)729-4123

6 9 0 - 7 5 1

제주법원우체국
요금후납

받는사람
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안국
빌딩 신관 3층

2005/11/16
특별송달

26933-01028271 제주법원

참여연대

110-240

우 690-751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950 **제주지방검찰청** / 전화 729-4123 / 전송 729-4555

수신자 참여연대 대리인: 나눔법률사무소 ~~정병선~~ 2004 정병선 발신자 검사 정유미 (인)

제 목 고소·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 2005.11.15

귀하가 고소(고발)한 당청 2005년형제 16391호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

피의자명	한훈 사기 등	주민등록번호	
죄 명	시한부 기소중지	처 분 일 자	2005.11.11
처 분 결 과	기소중지 (기타 의사협회 소재불명)		
피의자명	주식회사하스토스템 사기 등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	처 분 일 자	2005.11.11
처 분 결 과	기소중지 (기타 의사협회 소재불명)		
피의자명	김성수 사기 등	주민등록번호	
죄 명		처 분 일 자	2005.11.11
처 분 결 과	기소중지 (기타 의사협회 소재불명)		
피의자명	의료법인한라의료재단 사기 등	주민등록번호	000000-0000000
죄 명		처 분 일 자	2005.11.11
처 분 결 과	기소중지 (기타 의사협회 소재불명)		

안 내

1.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
   가. 30일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(검찰청법 제10조)를 하거나
   나. 10일이내에 재정신청(형사소송법 제260조,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)을 할 수 있으므로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내에 우리청에 제출하셔야 하며 위 기간경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2.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 또는 참고인중지처분된 경우
   가.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,
   나.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청 사건과로 주소 보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729-412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